

수원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8나86122(본소), 2018나86139(반소) 판결 [손해배상
청구 · 공사대금]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8나86122(본소), 2018나86139(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단5634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경진, 전해청, 김윤연, 김용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우름

담당변호사 이회덕

변론 종결 2020. 8. 18.

판결 선고 2020. 11. 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단5634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7,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0.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도면과 같이 토지를 둘러쌓는 형태로 ㉠A,B,C,㉠, 5개 구간 총면적 635m²에 보강토공사를 하고 옹벽과 석축을 설치하는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1억 원, 공사기간을 1개월로 각 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경 부지의 높낮이에 차이가 있어 별지 도면 ㉡구간에 추가 보강토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철수하였다.

라. 이후 피고가 시공한 별지 도면 ㉢구간의 보강토 옹벽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났고, 원고는 문제가 생긴 보강토를 철거한 후 다시 보강토를 쌓고 배수공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인접토지인 J 토지 위에 29, 30, 31, 13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따라 보강토옹벽을 설치하여 인접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6. 10. 21.경 양평군으로부터 인접토지의 침범과 관련하여 보강토 옹벽 재시공 및 인접토지 침범에 대하여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시행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DOCUMENT: 양평군 J 토지 도면(이미지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 원고 측의 요청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30,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평평하게 조성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공사 과정에서 이 약정이 이행되지 않자 위 토지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별도의 비용 없이 2m 높이의 보강토를 추가로 시공해 주기로 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중 제6면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면책 특약의 인정 여부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면책특약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별지 도면 ㉔구간의 보강토 배부름 현상, 인접토지 경계침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인 2016. 7.경과 2016. 10.경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할 당시 하자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공사의 기성고 부분만을 확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기성고 부분에 발생할 하자에 관한 보수청구권만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면책특약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외에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리고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에 보강토 층을 쌓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평평한 부지로 조성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가 심하고 토압이 가중되어 도로면으로 붕괴될 위험이 있어 이 사건 공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사건 추가공사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원고는 2016. 4.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타절 시까지 작업내역이 전부 적힌 견적서(갑 제10호증)를 제출받은 후 피고와 정산하였는데,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내역서로 제출한 을 제5호증에 기재된 품명 내용과,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이 모두 포함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의 지출내역으로 제출한 을 제14 내지 16호증은 을 제5호증의 내역과 전체금액, 항목별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비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이 사건 공사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로 원고와 피고가 2016.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공사를 타절하면서 그동안의 공사대금을 5천만 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5천만 원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정산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에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공사비도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가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정당하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부당한 반면에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반면에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태훈

판사안희경

판사김봉남

별지